홍보위원회 규정

제정 2000. 4. 6.
제1차 개정 2016. 06. 2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홍보위원회(이하"위원회")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교내·외 홍보 활동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
2. 각종 입시 홍보자료 제작 기획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대학 광고에 관한 사항(개정 2016.06.21)
4. 신입생 입학만족도 및 입시홍보정책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(신설 2016.06.21)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.
② 위원은 입학홍보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,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6.06.21)

제4조(위원장)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으로 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(개정 2016.06.21)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7조(회의록)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홍보부에서 관장한다(개정 2016.06.21)

제9조(시행)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10조(평가주기/활용) 신입생 입학 만족도 및 입시홍보정책 조사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, 평가 후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연도에 반영한다.(조 신설 2016.06.21)
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(조 변경 2016.06.21)

부칙
① 이 규정은 200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대외협력자문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498, 2016.06.21)
이 규정은 2016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